

의안번호	제 658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의안 번호	65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04.3월 충청권 3개 시도(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)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이후, 2013.4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면서, 4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- 이에 충청권관광진흥협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- 목 적 : 충청권관광상품 공동개발·홍보 및 관광진흥 도모
- 운 영 : 4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 - ※ 2017년도 주관도 : 충청북도('18년 충남, '19년 대전, '20년 세종)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40백만원 균등분담) / 총160백만원

나. 주요사업

- 충청권 4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
-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세일즈 마케팅
- 충청권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

다.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충청권 4개 시·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 관광 마케팅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필요
- 충청권 4개 시·도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에 대한 충청권관광진흥협회의 지위 유지가 요구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4개 권역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권관광산업의 진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소)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에 둔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의 관광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장은 당해 연도 주관 시·도의 관광업무담당과장(이하 “담당과장”이라 한다)이 맡되 매년마다 윤번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각 시·도 담당과장과 시·도관광협회장, 호텔협회장, 각 항공사 지사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회 결정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4개 시·도의 관광관련 담당이 대표 간사를 맡는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·결정한다.

① 충청권 관광산업진흥정책의 협의·조정

② 관광홍보, 외래 관광객 공동 유치에 관한 사항

③ 기타 충청권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- ② 정기회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 - ③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4개 시·도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검토와 실무 작업을 거쳐 20일 이내에 소집한다.
 - ④ 협의안건은 협의회장에게 미리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안건합의는 회원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7조(회의참석) ① 위원이 협의회에 부득이 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·군·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처리) 협의회의 사무는 대표간사가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9조(회의록) 회의록은 대표간사가 작성·관리한다.

제10조(자료제출 요구 등)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개 시·도에 자료의 제출, 의견개진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합의조정)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)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·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약개정 등) 협의회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위원명단

소 속		직 위
대전	대전광역시 관광산업과	과 장
	대전광역시 관광협회	회 장
	대한항공 대전지점	지점장
	아시아나항공 대전지점	지점장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	과 장
	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	회 장
충북	충청북도 관광항공과	과 장
	충청북도 관광협회	회 장
	한국항공공사 청주지사	지사장
	대한항공 청주지점	지점장
	아시아나항공 청주지점	지점장
	한국철도공사 오송관리역	역 장
충남	충청남도 관광산업과	과 장
	충청남도 관광협회	회 장
한국관광공사	대전충남지사	지사장
	세종충북지사	지사장

※ 16개 회원사(대전 4, 세종 2, 충북 6, 충남 2, 한국관광공사 2)

관 계 법 령 (발체)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)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
5.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